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34
----------	-------

발의연월일 : 2018. 9. 13.

발의자 : 김종희 · 황주홍 · 이찬열
유성엽 · 윤영일 · 김수민
박주현 · 조배숙 · 장병완
이용호 의원(10인)

제안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 별칙을 적용할 때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가 관련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손해배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의2 신설).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5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 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p>